#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94

발의연월일: 2020. 7. 3.

발 의 자:최혜영·고영인·강준현

이은주 · 임호선 · 김성주

인재근 • 신동근 • 김원이

송옥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.

2009년도 연계제도 도입 당시 적용된 최소연계기간 20년은 직역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20년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나,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음. 그럼에도 공적연금 간 연계신청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최소기간 20년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각 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자는 연계신청 제외대상으로 직역연금수 급자에 대한 제외근거는 법률상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 연계 를 신청한 경우 각 연금법에 의한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.

따라서 각 연금제도내 가입자와 제도 이동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,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계신청 제외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신청시 각 연금법상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,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급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국민연금 급여수급자가 연계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(안 제8 조제1항제1호).
- 나. 연계의 신청은 「국민연금법」이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며,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함(안 제8조의3 신설).
- 다.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(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)으로 함(안 제10조제1항·제2항, 제16조제3항제1호·제2호, 제19조제1항제1호·제2호, 법률

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).

- 라.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(안 제19조2제2항 신설).
- 마.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 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협의 ·조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함(안 제22조 삭제 및 제22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"때"를 "때(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을 연기하지 아 니한 경우에 한정된다)"로 한다.

제3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) ①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효력을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"20년"을 각각 "10년(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)"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제2항제3호"를 "제2항"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년"을 각각 "10년(「군인연금법」에

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)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년"을 각각 "10년(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)"으로 한다.

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
제6장의 제목 "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"를 "공적연금연계협의 체 및 심사청구"로 한다.

제22조를 삭제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단서 중 "20년"을 "10년(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복무기간을

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)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0 조, 제16조제3항, 제19조제1항 및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자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연계의 신청 등) ① 국민연	제8조(연계의 신청 등) ①
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	
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(연금가	
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)는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	
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	
연금관리기관(본인이 가입하였	
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	
기관을 말한다)에 연계를 신청	
하여야 한다.	
1.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<u>때</u>	1. ———— <u>때</u>
	(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에 따
	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
	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
	금지급을 연기하지 아니한 경
	우에 한정된다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3(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
	효 중단) ① 제8조에 따른 연
	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

제10조(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 기 직연금의 수급권자)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<u>20년</u>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 권이 생긴다.

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「국민연 금법」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 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 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 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20년 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

여들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							
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.							
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							
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							
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							
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							
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							
로 진행한다.							
제10조(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							
직연금의 수급권자) ①							
<u>10년(「군인연금법」</u>							
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							
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							
<u>0년으로 한다)</u>							
②							
<u>10년</u>							
(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복무기							

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 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. 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)-제12조(연계퇴직연금액) ① • ② | 제12조(연계퇴직연금액) ① • 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 ③ -----제2항-----라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직 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 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「군인연금법」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「군인연금법」 제3 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 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 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. 제16조(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) 제16조(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) ① • ② (생 략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

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 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 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
 연계기간이 <u>20년</u> 이상인 자 가 65세가 된 날

2.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

3. • 4. (생략)

④ (생 략)

제19조(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 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)
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,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

		·,
	1.	<u>10</u> 년(「군인연금
		법」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
		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
		<u>경우는 20년으로 한다)</u>
	2.	
		10년(「군인연금법」에 따
		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
		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
		년으로 한다)
	3.	· 4. (현행과 같음)
		) (현행과 같음)
]]	_	)조(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
,		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)
	(1)	

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 른다.

- 1.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(다만, 65세 가 된 연계신청자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 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 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 다)
- 2.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상 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

② (생 략)

보험료 등의 처리) (생략)

<신 설>

	-						
1.							
	- <u>10년(</u>	「군인	]연금	법」	에	따	른
	복무기2	간을	연계	기긴	<u> </u>	<u> </u>	<u>포</u>
	함하여	계산	하는	경우	는	20	<u>년</u>
	으로 한	<u> 다)</u> -					
2.			<u>10น</u>	<u> </u>	군인	]연	금

- 법」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 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)-----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19조의2(사망 시 납부된 연금 제19조의2(사망 시 납부된 연금 보험료 등의 처리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
  -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 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

# 제6장 <u>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</u> 심사청구

제22조(연계급여심의위원회) ①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
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연계급여
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
라 한다)를 둔다.

- 1.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
- 2.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 <u>항</u>
- 3.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 한 사항
- 4.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

   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

   한 사항
- 5.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계제 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

한다.

제6장 <u>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</u> 심사청구

<u><삭 제></u>

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은 연금법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·별정직 공무원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 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 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
  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
  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
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 <신 설>

제22조의2(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 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

의·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다.

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

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

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 정한다.